

기안용지

분류기호 문서번호	도이 442-	(전화번호)	전결규정 부시결 전결사항
처리기간	시 장		
시행일자	<div style="font-size: 2em; font-weight: bold; text-align: center;">결재</div> <div style="font-size: 1.5em; text-align: center;">1980. 1. 10</div>		
보존년한	<div style="font-size: 1.5em; text-align: center;">1980. 1. 14</div>		
보조기관	제2부시장 전 결	도시계획국장	일부담당관 (오만삼)
기안책임자	정관영	80. 1.	조

경유	각안참조	통	제
수신	신	신	신
참조	신	신	신

제 목 도시계획시설 (응향) 일부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

제 1 안 내 부 결 재

1. 김포국제 응향 확장 사업의 일환으로 응향시설 구역내 도로 진입에 따른 간선도로와의 접속관계로 일부 추가 묘자 항공전설사무소장 으로부터 요청이 있어 도시계획법 12조 및 13조의 준거사항을 7조 2 및 전설부과 463 호 (79. 12. 10)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묘자 합니다.

2. 문건은 당시 제 20 차 (79. 12. 19)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된 사항입니다.

제 2 안 고 시 안	별부심사	1980. 1. 8	제 1 호
서울특별시 도시 계획	담당자	김재경	법무담당관
도시계획시설 (응향) 일부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	과장	김재	법무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 (응향) 을 도시계획법 제

12 조와 제13 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2 및 건설부령 제463 호(79. 12. 10)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다.

2. 완제 도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와와 관할구역 도시정비와에 이치하여 도지도부자 및 이에 관계된 관계 보고한다.

1980. 1

서울특별시청

○ 일부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
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	비고
기정	김포국제공항	강서구 공항동일대	6,364,800㎡	증 1260㎡
변경	"	"	6,366,060㎡	

결정도면 도시와 갈음 (도면성략)

제 3 안

수신: 건설부장관

발신: 시장

제목: 갈음

1. 당시 도시계획시설 (공항) 을 결정과 같이 도시화하기 보고합니다

첨부: 도시문서본 및 도면 1부

제 4 안

수신: 홍우치 장관 (문화공보관)

발신: 시(국)장

제목: 관(시)보 게재 의뢰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2호 (80.1.) 의 내용을 관(시)보에 게재 의뢰하여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: 도시문서본 2 (1)매



제5안

수신: 강서구청장

발신: 시장

제목: 갑 음

1. 귀구 관내 도시계획시설 (동향)을 별첨과 같이 도시계획기 홍보하니 도면정리 및 관계과기 홍보하여 도시계획업무에 착오 없기 아람

첨부: 도시문서본 및 도면 1부

제6안

수신: 항공건설사무소장

발신: 시장

제목: 갑 음

1. 당시 도시계획시설 (동향)을 별첨과 같이 의 하였기 홍보하니 업무에 착오하시기 아람나

첨부: 도시문서본 및 도면 1부

끝



결 의 번 호	
결 의 년 월 일	1979. 12. 19
	제 20 회

결 의
사
항

도 시 계 획 시 설 (공 항) 일 부 변 경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결 의 안 건

제 출 자	서울특별시
제 출 년 월 일	1979. 12. 19

도시계획시설(공항) 일부 변경

가. 의결주문

당시 관내 도시계획시설(공항) 일부 변경 결정에 관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.

○ 변경 결정 조서

구분	시 설 명	위 치	면 적	비 고
기정	김포국제공항	강서구 공항동 일대	6,364,800 m ²	
변경	"	"	6,366,060 "	증1,260 m ²

○ 변경 결정 사유

김포국제공항 확장 사업의 일환으로 공항시설 구역내 도로 진입에 따른 간선도로와의 접속관계로 일부 추가코자하는 것임.

